방과후 학교 수업료·급식비도 교육비 소득공제

세 제

▲**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**=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천만원 이하 8%, 1천만원 초과~4천만원 이하 17%, 4천만원 초과~8천만원 이하 26%, 8천만원 초과 35%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1천200만원 이하 8%, 1천200만원 초과~4천600만원 이하 17%, 4천600만원 초과~8천800만원 이하 26%, 8천800만원 초과 35% 등으로 상향조정된다.

▲**교육비 공제대상 확대**=입학금·수업료·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·급식비·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.

▲**출산·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**=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·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·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해 준다.

▲**성실사업자 의료비·교육비 공제 신설**=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.

▲**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**=현재는 5천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된다.

▲**기부금 공제 확대**=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%에서 20%로 확대되고,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.

▲**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선**=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%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%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일몰이 2009년까지 연장된다

▲**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**=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(LPG) 프로판 및 가정용 LPG, 취사·난방용 액화천연가스(LNG)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%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된다.

금 융

▲**전자금융 거래 때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**=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한다. 보안등급은 1~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체한도가 2등급은 1등급 대비 40~50%, 3등급은 1등급의 10% 수준으로 축소된다.

▲**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**=방카슈랑스 4단계가 4월부터 시행되면 은행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.

▲**이륜차 사고위험도 따른 보험료 차등화**=1월부터 이륜차보험에도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.

▲**생명보험·손해보험상품 교차판매 허용**=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(생보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)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.

교육·노동·환경

▲**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**=내년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.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고,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돼 1~12월생이 함께 입학하게 된다.

▲**학교기업 설립기준 완화**='학교기업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'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종목도 대폭 확대된다. 사업종목은 현재 102개 업종이 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있으나 담배소매업, 유흥주점업, 여관업 등 학교가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금지업종이 19개로 줄어든다.

▲**교사 임용시험 3단계로 강화**=내년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·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.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은 필기시험에 영어 듣기평가가 포함되며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 및 면접,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.

▲**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**=내년 3월부터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 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진다.

▲**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**=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가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~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.

▲**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**=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.

▲**생활소음·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**=체력단련장업, 체육도장, 무도학원업, 무도장업, 음악교습학원, 음악교습소, 유흥주점,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사업장이 '소음·진동규제법'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. 이들 사업장 영업자가 아침(오전 5~7시)·저녁(오후 7시~10시) 45데시벨 이하, 낮(오전 7시~오후 6시) 50데시벨 이하, 밤(오후 10시~오전 5시) 40데시벨 이하의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.

부동산·교통

▲**1년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 분양**=1월 1일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.

▲**공동주택 6층 이상에서도 실내소음 45데시벨로 제한**=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단계 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소음측정을 실시해야 한다.

▲**재건축·재개발 조합설립 요건완화**=재건축·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요건이 완화돼 4분의 3(75%)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.

▲**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**=4월1일부터는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.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하며 관리규약 마련, 관리현황 공개, 장기 수선계획 수립,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등도 해야 한다.

▲**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**=30여년간 유지돼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.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,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된다. 또 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돼 불법 다단계, 임금 체불문제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.

▲**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**=내년 말까지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적용된다. 하이패스 이용시 할인율은 5%이다.

▲**1천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**=내년부터는 1천cc 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%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. 지금은 800cc 미만에만 할인혜택이 주어지지만 내년부터는 1천cc 미만 자동차로 확대 적용된다.

법무·경찰

▲**국민참여재판 시행**=1월부터 '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'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. 각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~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·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.

▲**새 신분등록제 실시**=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'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'가 1월부터 사용된다.

▲**엄격해지는 과태료 징수**=상반기 중 과태료 부과·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, 재판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된다.

▲**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**=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혼숙려제 등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. 결혼·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된다.

▲**일반인도 소송기록 열람 가능**=1월부터 사건 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도 권리구제와 학술연구, 공익목적 등을 위해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.

▲**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**=내년 10월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.

▲**어음·수표 기재사항 전자 송수신 가능**=어음이나 수표의 기재사항을 전자정보로 송수신하는 것도 어음·수표의 지급 제시로 인정한다.

보안등급 따라 전자금융거래 이체한도 차등화

전공 심화과정 받으면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

1천cc 미만 자동차 고속도 통행료 50% 할인

'주 5일제' 하반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